

#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44
----------	------

제출년월일 : 2010. 11. / 9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설치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기존 안산시세입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10. 16. ~ 2010. 11. 4.(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을 “지급에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6조에 따라” 로 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을 “시행에 필요한” 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실·과장	세정과장
	직위·성명	박 용 덕
	담당·팀장	세정담당
	직위·성명	배 순 철
	담당자	신운호
	성명·전화	(행정 2198)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급에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액이 안산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이란 .....
2. “공무원”이라 함은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이란 .....
3. “과년도 체납액”이라 함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 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이란 .....
4. “특별공적”이라 함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ه사업체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란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 ② (생략) ③제2항에 의하여 포상금 신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실·과·소·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따라 .....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포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7조(포상금 지급) ① .....제6조에 따라..... .....안산시 시세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라..... ..... ..... ..... ③ (현행과 같음)</p>
<p>9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li> <li>2. 지방세제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민간인</li> </ul> <p>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대상</li> <li>2.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li> <li>3.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한도</li> </ul>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p> <p>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lt;삭제&gt;</p>
<p>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  <u>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u>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 &lt;삭제&gt;</p>
<p>제11조(환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도착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자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11조(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  .....  .....  .....</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p>